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602
----------	------

제출연월일: 2026. 8. 21.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종갓집 환경지킴이단”란 각 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기적·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

다. 환경지킴이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역 실정에 밝고 환경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20명 내외로 구성

라. 환경지킴이단의 활동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6조)

- 지역 환경 개선에 필요한 의견 제안, 상습 쓰레기 투기 지역 순찰,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계도 등

마. 협의회 구성, 기능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제9조)

- 동별 종갓집 환경지킴이 단장으로 구성

바. 예산지원 및 운영규정, 포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 제12조)

- 사업 수행,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7조

나.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2026년 환경미화과 추경예산 반영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가족복지과-19950호, 2026. 5. 13.) 수용

- 제10조(예산지원 등) 조항에 ‘안전한’ 활동에 필요한 물품으로 명시하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의 안전한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

라. 입법예고: 2026. 4. 20. ~ 5. 11.(21일간) / 의견 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이란 각 동에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하며, 그 구성원을 “종갓집 환경지킴이”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동별로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을 둘 수 있다.

②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실정에 밝고 환경 관련 활동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환경지킴이 활동에 적합한 사람

③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의 명칭은 “○○동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이라 한다.

④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에는 단장과 부단장, 총무 각 1명을 두며, 단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을 대표한다.

제5조(활동)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폐기물 분리수거 및 깨끗한 정주 환경 개선 등의 실천 운동 확산
2. 지역 환경 개선에 필요한 의견 제안

3.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홍보 활동
4. 상습 투기 지역과 취약지에 대한 상시 순찰 및 정화 활동
5.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계도 및 신고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 생활 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육성) 구청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활동 중 우수사례의 적극 발굴 및 홍보활동 강화로 종갓집 환경지킴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제7조(협회의의 구성) ① 구청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 활동의 진작과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별 종갓집 환경지킴이 단장으로 구성된 “울산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을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별 종갓집 환경지킴이단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2. 동별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추진 실적 제출 및 활동 평가
3. 동별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지원 사항에 관한 협의
4. 그 밖에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활동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 등) ①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및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단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단과 협의회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 쓰레기 수거·처리 및 안전한 활동에 필요한 물품
2. 생활 쓰레기 발생 억제 및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생활 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종갓집 환경지킴이단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거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해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환경지킴이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3. 작성자

- 소 속: 환경미화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김양선
- 연락처: (052)290-3781